

<붙임 2>

- 일시 : 2019.7.29.(월) 10:00
- 장소 : 본부8층 회의실



1차 대학평의위원회 심의 자료

[회의 안건]

1. 전북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1P
2. 전북대학교 특수대학원학칙 일부개정학칙(안)-----3P
3. 전북대학교 대학 영문명칭 표기 변경(안)-----5P

2019. 7. 29



전북대학교

[교무처 교무과]

안건 1. 전북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발의부서 : 교무과]

1. 개정사유

- 강사에게 교원의 지위를 부여하는 ‘개정 강사법’ 시행(시행일 : 2019. 8. 1.) 관련, 강사 임용 등에 필요한 법령위임사항 학칙 반영
- 강사 관련 조문 이동·신설에 따른 겸·초빙교원 등 비전임교원 규정 정비

2. 주요내용

- 교원지위 부여에 따라 강사를 교직원에 포함(안 제22조제1항)
- 강사임용 관련 법령위임 사항 신설·반영(안 제22조제6항 및 제7항)
- 겸·초빙교원 등 비전임교원 규정 정비(안 제23조제2항)

3. 전북대학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전북대학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전임교원”을 “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로 한다.

제6항을 제8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6항과 제7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⑥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담당교과목 교수 및 이와 연계되는 학사행정업무를 수행한다.
- ⑦ 강사의 임용·재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방법, 임용기간, 임금, 교수시간, 복무·근무조건, 면직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제23조의 제목 “(명예교수 및 겸임교수 등)”을 “(명예교수 및 겸임교원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겸임교수, 기금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수, 석좌교수, 연구교원 및 시간강사를”을 “겸임·초빙교원, 기금교수, 석좌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을”로, “겸임교수 등”을 “겸임교원등”으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2019년 8월 1일부터 시행한다.

4.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22조(교직원) ① 본 대학교의 교직원은 총장, <u>전임교원</u>, 조교 및 행정직원으로 구분한다.</p> <p>② ~ ⑤ (생략)</p> <p><신설></p> <p><신설></p> <p>⑥ 교직원의 정원관리와 임용에 관한 사항은 법령에 특별히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제23조(명예교수 및 겸임교수 등) ① (생략)</p> <p>② 본 대학교에 <u>겸임교수, 기금교수, 객원교수, 초빙교원, 석좌교수, 연구교원 및 시간강사</u>를 두어 교육 및 연구를 담당하게 할 수 있으며, <u>겸임교수</u>들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p> <p>③ (생략)</p>	<p>제22조(교직원) ① ----- ---- <u>전임교원(교수, 부교수, 조교수), 강사</u>-----.</p> <p>② ~ ⑤ (현행과 같음)</p> <p>⑥ 제1항에 따른 강사는 담당교과목 교수 및 이와 연계되는 학사행정업무를 <u>수행한다.</u></p> <p>⑦ <u>강사의 임용·재임용, 심사위원회 구성, 심사방법, 임용기간, 임금, 교수시간, 복무·근무조건, 면직사유 등에 관한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u></p> <p>⑧ ----- ----- -----.</p> <p>제23조(명예교수 및 겸임교원등) ① (현행과 같음)</p> <p>② ----- <u>겸임·초빙교원, 기금교수, 석좌교수 등(이하 ‘겸임교원등’이라 한다)</u>을 ----- ----- <u>겸임교원등</u>----- -----.</p> <p>③ (현행과 같음)</p>

안건 2. 전북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발의부서 : 학사관리과]

1. 개정사유

- 학칙 제14조제2항에 의거 교육대학원 교원양성과정(교원자격취득예정자) 학생은 교직과목을 포함하여 학기당 8학점 취득이 가능하나, 재교육과정 학생은 학기당 6학점을 초과하여 취득할 수 없음
- 학칙 제35조제2항에 의거 현행 종합시험 응시자격은 4학기 이상 등록하고 18학점 이상을 취득해야함에 따라 재교육과정 학생이 4학기부터 종합시험에 응시하기 위해서는 3개 학기동안 매학기 6학점씩 취득해야 하나, 교육대학원 일부학과에서는 매학기 전공 2과목 개설이 어려운 상황으로 교직과목 1과목(2학점), 전공 1과목(3학점)을 이수하는 학기가 발생하여 3학기동안 18학점 취득이 불가함
- 따라서 교원양성과정(교원자격취득예정자) 학생은 3학기이후 종합시험 2회 응시가 가능한 반면, 재교육과정 학생은 응시 기회가 1회로 제한되는 경우가 다수 발생함에 따라 응시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고자 재교육과정 학생들의 종합시험 응시자격 이수 학점을 16학점으로 조정하고자 함

2. 주요골자

- 교육대학원 종합시험 응시자격 이수학점을 18학점에서 16학점으로 조정(안제35조제2항)

3. 전북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일부개정학칙(안)

전북대학교 특수대학원 학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5조제2항 중 “18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를 “18학점(교육대학원은 16학점)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로 한다.

부 칙

이 학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4. 신·구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안)
<p>제35조(외국어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p> <p>① (생 략)</p> <p>② 석사학위 청구를 위한 종합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자는 4학기 이상을 등록하고 <u>18학점</u> 이상을 취득한 자로 한다.</p>	<p>제35조(외국어 및 종합시험 응시자격)</p> <p>① (현행과 같음)</p> <p>② ----- ----- ---<u>18학점(교육대학원은 16학점)</u> ----.</p>

안건 3. 전북대학교 대학 영문명칭 표기 변경(안)

[발의부서 : 기획과]

□ 심의안건 : 대학 영문 명칭 표기 변경(안)

현행	변경(안)	비고
Chonbuk National University (CBNU)	Jeonbuk National University (JBNU)	구성원 설문결과 반영

□ 제안사유

- 현재 사용 중인 영문명 표기(Chonbuk)를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를 반영하여
도내 지명(전북, 전주) 표기와 일치되게 변경(Jeonbuk) 하고자 함
- ※ 전북(Jeonbuk), 전주(Jeonju) 등 도내 지명 영문 표기와 우리대학 영문 표기가 달라
지역대표 중심 대학의 상관성 결여, 인지 혼란 등의 문제가 지속 제기

□ 추진경과

- `19.3.25.~4.5. 교직원 대상 의견수렴(설문)
- `19.5.8.~5.17. 학생 대상 의견수렴(설문)
- `19.6. 대외평가 부서 등 관련부서 의견청취
- `19.7.9. 전북대학교 기획위원회 심의

□ 구성원 의견수렴 결과

- 대학 영문 명칭을 ‘Jeonbuk’ 로 변경하는 것에 대해 구성원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 교직원 69.7%, 학생 74.9% 이 ‘찬성’ 함

※ 설문조사 결과(요약)

구 분	현행유지	변 경	기 타	총 계
교직원(비율)*	434(22.9)	1,019(69.7)	10(0.6)	1,463(100)
학 생(비율)**	969(25.1)	2,891(74.9)	-	3,860(100)

(단위: 명,%)

* 1,894명 중 1,463명 응답(77.2%)
 ** 21,957명(대학원생 포함) 중 3,860명 응답(17.6%)

※ 2009년 영문 명칭 변경에 관한 의견수렴을 실시했으나, 영문 명칭 변경 찬성은 38%에
그쳐 그대로 유지하고 도메인만 68%가 찬성하여 변경 됨(jbnu.ac.kr)

□ 기획위원회 심의 결과

- (원안 가결) 출석 위원 ‘전원 찬성’
- 위원회 주요 의견 내용
 - 지역 대표 대학으로 인식되기 위해서도 지역 영문 표기와 일치하게 변경이 필요하며 지금이 시기 적절 함
 - 국내 홍보 시에는 표기법 통일의 목적과 더불어 새로운 시작의 의미를 부여하고, 대학 평판도와 관련하여 교수님들께 해외 컨퍼런스 참가 시 자기소개 부분에 영문 명칭 변경 내용을 담아 홍보해 줄 것을 협조 요청하는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
 - 대학 평가와 관련하여 영문 명칭 변경 후 초반의 순위 하락은 있을 수 있으나, 영향 최소화를 위해 단순한 표기 변경 공문 발송이 아니라 평가 기관(QS, THE)과 교류하여 ‘Chonbuk와 Jeonbuk가 연동’ 되도록 조치 필요
 - 현재 사용 중인 도메인(chonbuk.ac.kr)은 교수님들의 업적평가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므로 학교 영문명칭 변경에 관계없이 보유·사용

□ 영문표기 변경 시 대응 방향

- (예산소요 최소화) 우선 적용이 필요한 분야부터 단계별로 교체하고 그 외 분야는 필요성을 고려, 순차적으로 정비하여 교체비용 최소화
- (홍보활동 집중) 영문명 추가, 변경 협조 공문 발송 등 홍보역량 집중
 - 논문관련 기관인 Clarivate(SCI), Elsevier(Scopus), KRI(KCI)에 대학 영문 표기 변경에 관한 공문을 발송하는 등 국내외 논문 연구실적 누락 우려에 대응
 - 해외 평가기관(QS, THE)에 영문명 변경 공문 발송과 더불어 기관 방문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평가 영향 최소화 노력
 - 분기별 영문 뉴스레터 발송 시 영문변경에 관한 내용 홍보 등으로 대학 인지도 영향 최소화 노력

대학별(거점국립대) 사용 현황



학교명	영문명칭	표기법 준수여부	영문약자	도메인	비고
전북대	Chonbuk	X	CBNU	jbnu.ac.kr chonbuk.ac.kr	-
전남대	Chonnam	X	CNU	jnu.ac.kr chonnam.ac.kr	-
강원대	Kangwon	X	KNU	kangwon.ac.kr	-
충북대	Chungbuk	○	CBNU (충북)	cbnu.ac.kr chungbuk.ac.kr	-
충남대	Chungnam	○	CNU	cnu.ac.kr	-
경북대	Kyungpook	X	KNU	knu.ac.kr	-
경상대	Gyeongsang	○	GNU	gnu.ac.kr	-
부산대	Pusan	X	PNU	pusan.ac.kr	-
제주대	Jeju	○	JNU	jejunu.ac.kr	2009년 변경* (Cheju → Jeju)

* (제주대) 약 3억원 홍보 관련 예산 소요

부서별 후속조치 사항

내용	관련부서	비고
대학평의원회	교무과	
학무회의	총무과	
영문명칭 표기변경 확정 안내	기획과	
소관 업무별 자체정비계획 수립 및 추진	담당부서	
학칙 등 기존 영문명을 포함한 규정 개정 검토	기획과, 담당부서	
영문변경 국내홍보 실시(언론보도, UI수정·반영 등)	홍보실	
영문변경 국외홍보 실시(해외 자매대학 안내 등)	국제협력부	
논문관련기관, 해외평가기관 대응	성과관리부	
변경에 따른 소요예산 추계 및 반영	재무과	
정문 조형물, 시설 부속물(간판, 건물부착물) 교체	시설관리과	
학생 이메일 변경 등	정보전산원	

[참고] 영문표기 변경 후 엠블럼 및 로고

	 전북대학교 JEONBUK NATIONAL UNIVERSITY
Emblem	로고